

## 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'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' 를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1월 3일  
지식재산처장

### ①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

(연장 개요)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

구 분	연장 기간	해당 대상
1차연장	1년	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2차연장	2년	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
※ 관련근거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대통령령 제33665호) 제33조 제2항
-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(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) 제13조
- 「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」 (특허청고시 제2025-12호) 제11조의2

금회 공고 건은 '1차 연장' 사항에만 해당

### ② 신청 대상 및 추진 절차(1차연장)

(대상)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(舊.FT3)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\*되는 혁신제품

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[2025. 12. 25.](#)

추진 절차

-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(한국발명진흥회) → ② 지식재산처 확인 →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(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) 심의 → ④ 최종 연장 승인 (25년 12월 말, 예정)

### 3 지정기간 연장 신청 대상 및 제외대상(1차연장)

#### □ 지정기간 연장 대상

○ 아래의 '가'항 부터 '라'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

- 가.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
- 나.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
- 다.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
- 라.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
구분	항목	세부사항
가	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(최소 1건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</li> <li>○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</li> </ul>
나	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(최소 1건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</li> <li>○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</li> </ul>
다	지정기간 내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</li> <li>○ 중앙관서 시상·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</li> </ul>
라	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기관이 구매 확약을 제시하는 경우</li> <li>○ 기업의 귀책 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</li> </ul>

#### □ 지정기간 연장 제외 대상

○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및 연장 대상에서 제외

- 가.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
- 나.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
- 다.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
- 라.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

구분	항목	세부내역
가	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간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</li> </ul>
나	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의 기간만료, 등록취소, 양도,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 권리가 상실된 경우</li> <li>- 제품규격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(지식재산권) 모두 유효해야 하며, 1건 이상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연장 불가</li> </ul>
다	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</li> </ul>
라	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일 품명·동일 기술(특허, 실용신안)로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</li> <li>-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이전, 동일 세부품명 번호(10자리)이면서 동일기술(특허·실용신안)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</li> </ul>

#### 4 신청 서류(1차연장)

○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

번호	구 분		필수여부	비고	
1	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		필수	붙임1	
2	서류제출 신뢰서약서		필수	붙임2	
3	신청자격 증빙자료 (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)	3-1 <sup>비고1</sup>	납품실적목록 *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	해당 시	붙임3
		3-2 <sup>비고2</sup>	구매계약서 *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	해당 시	-
		3-3 <sup>비고3</sup>	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	해당 시	-
		3-4 <sup>비고4</sup>	구매확약서	해당 시	붙임4
4	혁신제품 지정 인증서		필수	-	
5	최종 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(특허·실용신안)의 등록원부 <sup>비고5</sup>		필수	-	

비고1)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·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

비고2) 계약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

비고3)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

비고4)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,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

비고5) 특허·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

#### 5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 안내(1차연장)

□ 신청기간 : '25. 11. 3.(월) ~ '25. 11. 19.(수) 18:00 정각까지

※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,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.

□ 신청방법

○ 제출처 : 이메일 신청 ([fast@kipa.org](mailto:fast@kipa.org))

○ 신청서류 제출방법

- 4항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를 기한 내 e-메일로 제출

□ 문의처

○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최경주 연구원

☎: 02-3459-2807, E-mail: [fast@kipa.org](mailto:fast@kipa.org)

[붙임1]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

## 혁신제품 지정기간 (1차연장) 신청서

혁신제품명						
혁신제품 지정번호				혁신제품 지정기간		
회사개요	회사명				법인번호	
	주 소	(□ - )				
	행 정 담당자	직위/성명			부 서 명	
		전화번호			FAX번호	
기간연장 신청사유	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√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신청' 사유			해당여부	
	1	지정기간 동안 국·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			( )	
	2	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			( )	
	3	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 및 중앙관서 시상·표창			( )	
	4	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-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에 해당			( )	
기간연장 제외여부	아래 3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√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제외' 사유			해당여부	
	1	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			( )	
	2	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			( )	
	3	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-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이전, 동일 세부품명번호(10자리)이면서 동일기술(특허·실용신안)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			( )	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25. . .  
 업체명 :  
 대표자명 : (인)

지식재산처장 귀 하



[붙임3] 납품실적목록

##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

번호	물품식별 번호	규격명	수량	금액(원)*	납품처		납품일자	비고
					국내/해외	기관명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
\*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

주) **혁신제품 지정기간(3년)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**,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**물품 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,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**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(단, **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**)

**[붙임4] 구매확약서**

## 혁신제품 구매확약서

■ 동 자료는 혁신제품 연장 심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

<b>구매확약 수요기관</b>	<b>기관명</b>	
	<b>담당자명</b>	
	<b>연락처</b>	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,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및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
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,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**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.**

<b>혁신제품</b>	(혁신제품 지정번호) (혁신제품명)
<b>기업정보</b>	(기업명) (사업자등록번호)
<b>구매확약 희망규격</b>	(모델명) ☞ 다수 규격 희망 시(필요 시) 별도 붙임 생성 가능 (물품식별번호) ☞ 다수 규격 희망 시(필요 시) 별도 붙임 생성 가능
<b>활용목적</b>	자율기재

※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

2025년    월    일

기관명 :

구매부서명 :

구매부서장 :

(인)

※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,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,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

**지식재산처장 귀하**